

주차관리운영규정

2011.03.01.제정	2012.08.01.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17.03.01.일부개정
2019.06.31.일부개정	2020.01.14.일부개정	2024.03.01.일부개정	<u>2024.08.27.일부개정</u>

<시설안전팀>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운영규정은 동명대학교 캠퍼스(이하 캠퍼스)내의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주차장 이용자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차관리) ① 캠퍼스내 주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둔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주차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수입은 법인회계에서 관리하며 학교는 주차요금 총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공과금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여 법인으로부터 입금을 받는다.

④ 캠퍼스내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주차요금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출입문 통제) ① 캠퍼스 출입문은 제1정문, 제2정문 및 제3정문, 제5주차장 출입문을 둔다. (개정 2024.8.27.)

② 캠퍼스 출입문은 24시간 항상 입·출차 가능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폐쇄할 수 있다.

③ 입학식 등 학교의 특별한 행사일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및 주차관제시설) ① 캠퍼스 주차장은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제5주차장 및 도로변 주차장을 두되 학교 시설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4.8.27.)

② 주차장에는 주차구역선을 도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용도별로 주차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캠퍼스 출입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학교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주차관리실 및 주차요금정산소 운영) ① 주차관리업무를 위하여 주차관리실을 별도로 둔다.

② 주차요금 정산소는 제1정문에서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차관리실 업무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3:00)까지로 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공휴일 및 기타 국경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나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차 및 통행제한) ① 학내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주차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 수가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교내에 출입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차량(캠핑카, 카라반, 공사용 차량(지게차, 트럭(1톤초과), 고소작업차, 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포함되는 건설기계) 등 일반차량 외 모든 차량을 포함)에 대해서는 주차 및 통행을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사의 특수 차량 및 학교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제외한다.(신설 2024.8.27.)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권의 종류는 정기권, 일반권, 할인권, 무료권으로 구분하며, 주차권 종류별 주차요금은 <별표1>의 주차요금표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7.3.1., 2019.9.1., 2020.1.14., 2024.3.1., **2024.8.27.**)

② 주차요금은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균일하게 징수한다.

③ 정기권 주차요금 징수는 학기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권 차량이 정기권 등록기간을 경과하여 학기중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하며, 월별 잔여일수가 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정기권 50,000원은 월8,000원으로, 정기권 60,000원은 월 10,000원으로, 정기권 120,000원은 월 20,000원으로 적용한다. 제5주차장 정기권 차량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 2019.9.1., 2020.1.14., **2024.8.27.**)

⑤ 주차요금표에 따라 할인 또는 무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차량은 주차할인권 또는 무료주차권을 시설안전팀 또는 관련부서에서 받아 주차요금정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당일에 한한다. (개정 2012.8.1., 2014.3.28., 2020.1.14., 2022.4.1.)

⑥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할인권 또는 무료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부서에서 관리부서로 통신문을 발송하여 처리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⑦ 주차위반차량의 주차요금은 제8조 3항에 의한다.

제8조(주차위반 단속) ① 캠퍼스 내의 주차구역 이외의 주차를 주차위반이라 하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차위반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을 운영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주차관리실로 주차위반사항을 즉시 알린다.

③ 주차관리실에서는 단속요원이 통보한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정기간은 주차횟수에 따라 정기간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일반권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4.)

1. 정기간차량의 주차위반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0일 동안 정기간을 정지하고, 위반차량은 일일 2,000원의 주차요금을 별도로 납부
2. 정기간 차량의 주차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정기간을 정지하고, 위반차량은 일일 2,000원의 주차요금을 별도로 납부
3. 위 1, 2호의 정기간 정지기간 중에 주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일일 2,000원의 적용에서 제외

- 되며, 일반권 시간계산을 적용하여 일일 최대 10,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
4. 일반권 일반차량이 주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1시간 무료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권 시간계산을 적용하여 일일 최대 10,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
 5. 일반권 학생차량이 주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1시간 무료 및 학생 일일 할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권 시간계산을 적용하여 일일 최대 10,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
 6. 무료권 적용차량이 주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30분 무료 및 일일 무료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권 시간계산을 적용하여 일일 최대 10,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
 7.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주차위반사항의 적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운영

제9조(주차요금 환불) ① 정기권의 주차요금 환불은 기 납부한 주차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지급한다. 다만, 월별 잔여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정기권의 이용기간 중 1/2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하다. 단, 이용자의 휴직,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환불 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환불을 위한 월 단위 금액 계산은 제7조 제4항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주의 의무)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는 반드시 주차구역선 내에 주차
2. 이용자는 관리자가 주차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
3. 주차장 시설물 또는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세차, 수리, 음주, 고성방가, 상행위 등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경음기 사용 또는 추월행위 등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 주차장내 안전표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함

제11조(출입제한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출입제한 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질서를 문란시켜 다른 차량의 출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될 때
2. 차량 피해사고 발견 후 사고현장 유기 등 피해자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을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제12조(출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2. 주차관련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한 경우
3.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 캠퍼스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관리요원의 귀책사유 혹은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③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차량사고 발견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사고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임의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조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④ 차량사고 접수시 주차장관리자는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 작성시 주차장내 사고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시에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⑥ 피해차량 수리에 대한 견적비 및 수리비 산정시 피해자가 원하는 수리업체와 주차장관리자가 지정한 수리업체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관리자가 지정하는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현저하게 인상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면책사유)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차위반으로 발행한 피해
2. 주차장이 아닌 제3의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3. 주차요금이 무료인 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
4. 최초 차량사고지점에서 이탈하여 현장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차량 사고 신고를 한 경우
5. 차량사고에 대한 가해자가 있을 경우
6.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피해
7. 차량접촉사고가 아닌 사람에 의한 고의·과실로 발생한 피해
(예 : 차량기스, 흠집, 파손, 도난사고 등)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별표1> 내지 제4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별표1> 내지 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차요금표(개정 2017.3.1.,2019.9.1.,2020.1.14.,2024.3.1., **2024.8.27.**)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정기권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차량 * 조교 차량 * 비전임교원(초빙, 객원, 겸임 등) 차량 * 시간강사(대학, 평생교육원) 차량 * 평생교육원 수강 학생 차량	(정기권1) * 50,000원/학기 * 장애인(운전자 본인)은 50% 할인
	* 교직원(전직원, 연구원, 전임교원, 기간제전임교원, 산학단 계약직원) 차량	(정기권2) * 60,000원/학기 * 장애인(운전자 본인)은 50% 할인
	* 창업보육센터 임직원 차량 * 소비조합 입주업체 임직원차량 * 지정보수업체 임직원 차량	(정기권3) * 120,000원/학기
	* 학교시설 정기이용자(운동장, 테니스장, 졸업생 도서관이용 등) 차량	(정기권4) * 60,000원/학기
	* 법인임대 업체 임직원차량 외 기타차량 (단, 학내 주차장 사정에 따라 주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음)	(정기권5) * 60,000원/월
	* 제5주차장 주차 차량	(정기권6) * 정기권의 50% 할인 (교직원, 학생) * 제5주차장 정기권 차량이 캠퍼스 내 주차장 이용 시 1일 2,000원 적용
할인권	* 공인자격시험 수험 차량 * 특강강사 * 평생교육원 수강생,선센터 수강생 및 기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부인 상대 교육의 수강생	* 2,000원/1일 (단, 평생교육원 수강생중 17:00시 이후출차 차량은 1,000원/1일)
	* 학교 시설물 사용승인을 득한 차량(단체, 협회 등)	* 2,000원/1일
무료권	* 공용(업무용) 차량 * 학교의 공식행사 참가 차량(입학식, 졸업식 등) * 발전기금(장학기금) 납부관련차량, 학생 취업 관련업무 차량 * 입시관련 차량 * 택시 및 학교업무 관련 관광버스 * 우편물차량, 소방 및 응급차량, 공무원 공무차량(공무원증	* 전액 무료

	제시) * 특수차량(한전, 한국통신 보수차량/ 언론사 취재차량/ 택배차량) * 동명공업고등학교 교직원 차량	
일반권	* 학교 민원차량(민원, 증명서발급, 입찰참가 등) * 일반차량(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모든 차량)	* 30분 이내 : 무료 * 30분 초과시 : 300원/10분 * 1일 최대 15,000원(학생은 2,000원)
	* 경차(배기량 1,100cc이하) 및 장애인 차량(장애인 탑승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할인후 1일 최대금액 적용